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1가단50461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허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김용민, 박규택, 박문학, 정필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형주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4,455,5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4. 5. 2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C에게 금 30,000,000원{이자율 연 27.99%(지연이자율 연 33.99%), 대출기간 36개월}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2019. 8. 31. 기준 C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25,960,716원 및 이자 및 지연손해금 41,077,197원의 합계 67,037,913원이다.

다. 2019. 9. 27. D은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E의 소유였다가 2017. 12. 13.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12. 27. 접수 제76069호로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E은 C의 아버지인데 2019. 10. 2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인 C, G, H가 존재하였다. 망인은 생전인 2014. 1. 9.경 자인 C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바. 2019. 11. 1.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G, H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하였고, 2020.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 3. 25. 접수 제17213호로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는 망인의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였고, 2020.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0467호로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아. 피고는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I외 2필지 J건물(이하 'J건물'라 한다.) K호 및 L호를 분양받았고, 위 L호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M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자.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83,550,000원이었으며, 근저당권자 M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88,5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6호증,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C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모자관계인 C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소멸한 점, 이 사건 토지는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J건물 K호 및 L호로 변환된 점, 위 L호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83,550,000원¹⁾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8,500,000원을 공제한 후 C이 망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50,000,000원을 더한 245,050,000원이 상속대상재산이 되고 여기에 C의 상속분 2/9를 곱하면 54,455,555원(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이 되며 여기에 C이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50,000,000원을 공제하면 C의 상속분은 4,455,555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간의 2019. 11.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의 상속분인 4,455,555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

별지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피고가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준이 되었던 금액이나

관리처분계획상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또는 분양기준가액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N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